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43
------	------

발의일자 : 2024. 5. 28.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들의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등 중독의 급격한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예방교육과 홍보 및 전문가 등 자문(안 제7조 및 제8조)
-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제10조)
- 비밀준수 의무(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2) 「청소년기본법」 제8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5. 29. ~ 2024.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6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